

의안번호	제 216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9월 일 (제303회)

**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광희 의원의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9일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발 의 자 : 이광희, 김도경, 노광기
김양희, 박문희, 정 현
장병학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일부개정(2011.7.14.)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4일 연장되고,
- 제2차 정례회기 중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회의일수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함(안 제2조)
- 120일 이내 ⇒ 130일 이내
-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60일 이내로 함(안 제2조)
- 50일 이내 ⇒ 60일 이내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20일”을 “130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5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연간 회의 총 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<u>120일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2조(연간 회의 총 일수) ----- ----- -----130일-----</p>
<p>제3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<u>50일</u>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 ----- -----60일-----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2조(연간 회의 총 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50일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